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387호

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을 개정(‘22.12.27. 일부개정)하였음.

이에, 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(안 제3조)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투자진흥지구 지정(변경) 신청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3조 신설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(복합도시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견(이유)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
- 전화(☎) 044-201-3687, 3698 / 팩스 044-201-5565